

審 查 報 告 書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7. 12. 17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7. 12. 17
- 라. 상정일자 : 1997. 12. 23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총무과장 박상용)

가. 제안이유

- 오남2통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등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지역 오산동란의 오남2통을 분통하여 오남4통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로,

- 오남2동이 대남천과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일반 주택지역과 다세대 주택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역의 통·리장의 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분통 조정하여 시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7/호
의결년월일	1997. 12. (제 회)

서산시 행정동 · 리의 명칭 · 관할구역 및
동 ·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12. 17.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년월일 1997.12.17

제 출 자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오남2동이 대남천과 농경지로 일반주택 지역과 다세대주택 지역등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화합등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마을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동·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동지역 오산동리의 오남2동을 분통하여 오남4동을 신설 조정하고자함.[안 별표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오산동의 관할구역란중 오남동의 “3”을 “3,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1]			[별표1]		
행정동명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행정동명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오산동	1	오남동(1,2,3동) 장 동(1,2통) 덕지천동	오산동	1	오남동(1,2,3,4통) 장 동(1,2통) 덕지천동